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7일, 김민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2차 교육위원회(2024.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민전의원)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

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위원회(시·도)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예방대책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시행계획과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감·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적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